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(주)케이와이자산운용

2. 제재조치일 : 2026. 5. 27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 관	· 기관주의, 과징금(171백만원), 과태료(92백만원) 부과
임 원	·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주의적경고 상당) 1명,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주의 상당) 1명 · 과태료(6백만원) 부과 (1명)
직 원	·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견책 상당) 1명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

-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등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,
 - 2021.○.○. (주)케이와이자산운용은 대주주 B의 특수관계인인 C가 D 등 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0억원 상당의 한도대출을 받는 과정에서
 - 자신이 보유한 C 주식 총 0주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을 공동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여 한도대출의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.

< 관련 규정 >

1. 「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'자본시장법)」 제34조 제2항
2.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38조 제1항 제1호

(2) 투자자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

-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·지시·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,
 - 집합투자업자인 (주)케이와이자산운용은 (2021.○.○.~검사종료일 현재까지) 투자자 甲으로부터 일상적인 명령·지시·요청을 받아 Y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였다.

< 관련 규정 >

1. 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 제8호
2.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87조 제4항 제5호

(3) 준법감시인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

-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,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·해지업무 등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,
 - (주)케이와이자산운용 준법감시인 乙은 2021.○월 경부터 甲으로부터 Y펀드 설정을 요청받은 이후 2021.○.○. 동 펀드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 체결에 관여하는 등 집합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였다.

< 관련 규정 >

1.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(이하 '지배구조법)」 제29조 제2호
2. 「지배구조법 시행령」 제24조 제1항 제2호
3.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47조 제1항 제3호

(4)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

-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담보제공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 - (주)케이와이자산운용은 2021.○.○. C 주식 0주(0억원)를 D 등 6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,

이는 2021.○월말 기준 (주)케이와이자산운용의 자기자본(약 0억원)의 5%를 초과한 담보제공임에도 불구하고 보고기간 내인 2021.○.○.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있다.

< 관련 규정 >

1. 「자본시장법」 제33조 제3항, 제5항
2.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36조 제2항, 제5항

나. 주의사항

(1) 회계감사인 선임 보고의무 위반

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일부터 1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

- 그러나 (주)케이와이자산운용은 Y펀드를 2021.○.○. 설정 후 2022.1.○. F회계법인을 펀드의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, 보고기간 경과 후인 2022.11.○. 금융위원회에 회계감사인 선임 보고를 하였다.

< 관련 규정 >

1. 「자본시장법」 제240조 제4항